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2서식] <신설 2018. 5. 29.>

석면해체작업감리인 [ ]지정 [ ]변경지정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7일

발주자	회사명		대표자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공사업체 (시공자)	회사명	대표자	법인(사업)번호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	공사기간		공사금액 천원		
감리인	회사명	대표자	법인(사업)번호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석면해체·제거업체	회사명	대표자	등록번호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석면 해체·제거 감리용역 현황	용역명				
	현장주소 (전화번호:)				
	용역 개요	1.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량(㎡) 2.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(㎡)			
	기간 및 금액	석면해체·제거 감리기간	~	석면해체·제거 감리금액	천원
감리원 배치 현황	직 무	등 급	성 명	생년월일	감리원 현장 배치기간 (일수)
					~ ( )
					~ ( )
					~ ( )
변경 내역	구 분		변경 전		변경 후
	변경내용				
	※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[ ] 군 입대 [ ]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[ ]부도·폐업으로 인한 퇴직 [ ] 이민 [ ] 사망 [ ] 발주자의 교체 요청 [ ]퇴사 또는 휴직 [ ] 양도·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[ ]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				
감리인 확인	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감리인 회사명: 대표자명: (서명 또는 인)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:	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[ ]지정 [ ]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고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